

202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

경제대도약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

01 경제대도약 지원

- 0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
- 02 자본시장 활성화
- 03 지역성장 지원

0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

- 01 취약계층 지원 강화
- 0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
- 03 납세자 권익보호

03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

- 01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
- 02 조세탈루 방지

경제대도약 지원

0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

1 R&D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

	현행	개정안
국가 전략 기술 확대	8개 분야 78개 기술 * ①반도체 23개, ②이차전지 10개, ③백신 7개, ④디스플레이 8개, ⑤수소 10개, ⑥미래형운송-이동수단 7개, ⑦바이오의약품 8개, ⑧인공지능 5개	8개 분야 81개 기술 * ①기술추가: 반도체(1개), 미래형 운송-이동(2개), ②현행기술 범위 확대: 반도체(1개), 수소(1개)
신성장·원천 기술 확대	14개 분야 273개 기술 * ①미래차, ②지능정보, ③차세대S/W, ④콘텐츠, ⑤전자정보 디바이스, ⑥차세대 방송통신, ⑦바이오·헬스, ⑧에너지 환경, ⑨융복합소재, ⑩로봇, ⑪항공 우주, ⑫첨단 소재 부품 장비, ⑬탄소중립, ⑭방위산업	14개 분야 284개 기술 * ① 기술추가: 탄소중립(4개), 첨단소부장(4개), 바이오 헬스(1개), 에너지 환경(1개), 융복합 소재(1개)

2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범위 확대

R&D 비용	현행	개정안
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	R&D 세액공제 미적용	R&D 세액공제 적용

3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인원 수 규정

최소 고용 증가 인원 수 (초과분만 공제)	중견기업	5명
	대기업	10명

02 자본시장 활성화

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 마련

배당소득 범위	현금배당액 (중간·분기·특별·결산배당 모두 포함)
적용대상	투자전문회사,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*는 제외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'0' 이하인 적자배당** 기업은 제한적 적용
배당성향	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으로 산정 *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으로 산정

*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
** 전년 대비 배당이 10% 이상 증가하고,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% 이하인 법인

2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

	현행	개정안
환류대상 배당	신설	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* * 자본준비금·이익준비금 감액배당 제외
환류비율	기업소득의 70% 투자포함형 또는 15% 투자제외형	기업소득의 80% 투자포함형 또는 30% 투자제외형
기업소득 계산상 가산항목	국세환급금 이자 불산입액, 기부금 한도 초과이월액, 손금산입액 등	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 *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'27년부터 포함

3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	현행	개정안
대상자산	토지, 건축물	토지, 건축물 + 유가증권 (국·공채, 상장법인 주식, 국내투자형 펀드)
과세이연 방식	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	(토지, 건축물)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+ (유가증권)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 까지 과세이연 (대체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적용)

03 지역성장 지원

1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규정

투자금액	투자금액 5억 이상
고용인원	상시근로자 10명 이상

2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

	현행	개정안
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 (감면세액 추정기준)	50% 이상인 경우	40% 이상인 경우

3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

	현행	개정안
양도세 중부세 특례* 적용 미분양 주택 *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추가취득시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	취득가액 6억원 이하	취득가액 7억원 이하
CR리츠 매입 미분양 주택에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 배제 및 중부세 합산배제 지원기간 연장	'25.12.31.까지 취득분	'26.12.31.까지 취득분

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

01 취약계층 지원 강화

1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

가입 연령	19세 이상 34세 이하 (병역이행시 복무기간 제외)
가입대상 소상공인	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
중도해지사유	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, 천재지변, 가입자의 퇴직 및 가입자의 질병 발생 등

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 범위 확대

	현행	개정안
월정액 급여	210만원 이하	260만원 이하
총 급여액	3,000만원 이하	3,700만원 이하

3

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* 구제화 및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 확대

*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요건 충족한 주말부부 배우자도 세액공제 적용

	현행	개정안
주말부부 범위	신설	①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, ②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
대상 주택 규모	85㎡ (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㎡ 이하)	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㎡ 이하 (그 외의 경우 현행과 동일)

0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

1 생계형채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* 세부 규정 마련

*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

수입금액	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3년 평균 15억원 미만
실태 조사일	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
징수곤란 인정 채납액	채납자가 보유한 재산평가액의 140%를 초과하는 채납액도 징수곤란 채납액으로 인정

2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교세 적용

	현행	개정안
비과세 대상 농가부업 축산규모	소 50마리, 돼지 700마리, 양 300마리 등	소 50마리, 돼지 700마리, 양 300마리 등 + 개 400마리 (~27년)

3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 규정

감면대상	알코올 도수 8.5도 이하,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 ※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
감면한도	연간 반출(수입)량 400㎏

03 납세자 권익보호

1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선택 범위 확대

	현행	개정안
대상	지분율이 큰 배우자, 지분율이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선택	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 → 부부 중 누구든 1인이 특례주택*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* 상속주택, 대체주택, 지방저가주택

2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

	현행	개정안
공익법인 등	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*	폐지

*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보고

3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 권한 범위 확대

	현행	개정안
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대상 사업자	소규모 사업자* * 기준 수입금액이 (농업 등) 6억원 (제조업 등) 3억원, (부동산임대업 등) 1.5억원 이하	전체 사업자 ※ 수입금액 기준 삭제

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

01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

1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

	현행	개정안
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	2만원 추가 납부·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	1만원 추가 납부·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
법인세	2만원	1만원
부가가치세	1만원	5천원
양도소득세(예정신고)	2만원	좌 동

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

	현행	개정안
자녀수	원천징수 시 자녀수별 공제금액(원/월)	
1명	12,500	20,830
2명	29,160	45,830
3명	29,160 + 25,000 × (자녀수 - 2)	45,830 + 33,330 × (자녀수 - 2)

3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항목 합리화

	현행	개정안
과세표준 제외	국외사업장 발생 수익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의 가액 등	서민금융 대출 관련 수익,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수익,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추가
손익통산 허용 대상	파생결합증권 등의 거래	국채 거래

4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

	현행	개정안
외국은행 국내지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	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더 큰 금액을 손금불산입	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인 경우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인정

02 조세탈루 방지

1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 등

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	비밀유지 위반 건수에 비례*하여 과태료 부과 최저 5백만원, 최고 2천만원, *(Max(위반 건수×50만원), (500만원))
실태확인원 채용	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실태확인 방법	주소지·사업장 등 방문 시 사전안내 및 증표제시 등
실태확인원 교육	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, 기초세법, 안전·보안 등 교육
실태확인원 감독	실태확인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주기적 지도·감독

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구제화

과태료 금액	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
--------	--

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

	현행	개정안
대상 업종	142개 업종	총 144개 업종 (추가)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 (어린이집, 유치원 제외),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